

2025년도 특화창업패키지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도 특화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등록에 최대 3일 소요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창업특화 패키지사업」 협약체결 약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일반 모집 트랙 창업기업 모집 공고**로 지역센터 추천 트랙은 별도 절차로 추천·접수하오니 신청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공고는 2025년 중소기업부 지원사업 통합공고 상 '통합창업패키지'와 동일한 사업의 공고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산업분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비수도권 (예비)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의 업력 10년 미만 신산업분야* (예비)창업기업
* AI·빅데이터·바이오 등 27개 신산업 창업분야 (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5억원), 창업 특화 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기술최적화, 시험분석·실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 특화 프로그램*
BM 고도화, 투자유치, 개방형 혁신 지원 등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은 [붙임8]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5. 4월 ~ '25.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70개사 내외 (일반모집 42개사, 센터추천 28개사 내외)*

* 트랙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집 유형** : ①일반 모집 및 ②지역센터 추천 2-Track

구 분	< Track 1 > 일반 모집	< Track 2 > 지역센터 추천
지원 수	42개사 내외	28개사 내외
모집 방식	비수도권 창업기업 공개 모집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추천·선정

* 지역센터 추천 트랙은 센터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기업을 추천(센터에서 별도 안내)하고, 추천된 대상 기업은 별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산업분야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10년 미만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붙임4] 신산업창업분야(27개) 참고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 자격 세부 조건 ></p> <p>▶ 신청가능 업력 : 2015.2.19. ~ 2025.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p>*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p>([붙임1,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p> <p>*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p>

예비창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창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자이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비수도권 지역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5.1.19.~2.19.)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 자격 세부 조건 ></p> <p>▶ (참고)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5.2.19.)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div>
--------------	---

□ 모집 구분

- (모집 대상) 투자 실적 유무, 투자 규모 등에 따라 구분·모집

구 분	시리즈 ①	시리즈 ②	시리즈 ③
모집 대상	투자실적 없음 (예비창업자 지원 가능)	초기투자단계 창업기업 (누적 투자금 1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후속투자단계 창업기업 (누적 투자금 4억원 초과)
제외 기준	업력 3년 초과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3.2.19.~'25.2.19.) 투자 실적이 없는 기업	-
지원 수	19개사 내외	18개사 내외	5개사 내외

* 투자자 요건, 투자계약 등 투자기준 세부내용은 [붙임5]투자기준 안내자료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지원 단계별 아래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예비창업자)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구 분	지원 제외사업(사업연도 불문)	비고
시리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패키지 (생애최초 포함) ○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초기·도약기·실험실특화 포함)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포함) 	구분 단계별 참여 시 차년도 제외사업 목록 참여 불가
시리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 (초기·도약기·실험실특화 포함) 	
시리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포함)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 '23, '24년 협업과제) - 창업도약패키지 ('24년 투자병행, 융자병행 과제 포함) ○ 창업중심대학 (초기·도약기·실험실특화 포함)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협약 중인 기업 ('25년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고) 	

-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시리즈1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여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공통·특화 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모델 (BM) 개선, 기술 최적화,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참여 단계(시리즈)별 사업화 자금 상이) - (시리즈 ①) 기본 사업화 자금 1천만원 지원 후 사업화 진척도, 투자 가능성 등을 평가(6월), 후속 자금 차등 지원(최대 6천만원 이내) - (시리즈 ②, ③)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14천만원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리즈①</th> <th>시리즈②</th> <th>시리즈③</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금액</td> <td>1천만원 + N천만원(후속) (평균 4천만원, 최대 7천만원)</td> <td>평균 7천만원 (최대 1억원)</td> <td>평균 1.2억원 (최대 1.5억원)</td> </tr> </tbody> </table>	구분	시리즈①	시리즈②	시리즈③	지원 금액	1천만원 + N천만원(후속) (평균 4천만원, 최대 7천만원)	평균 7천만원 (최대 1억원)	평균 1.2억원 (최대 1.5억원)												
	구분	시리즈①	시리즈②	시리즈③																	
	지원 금액	1천만원 + N천만원(후속) (평균 4천만원, 최대 7천만원)	평균 7천만원 (최대 1억원)	평균 1.2억원 (최대 1.5억원)																	
	<p>*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을 차등 지원하며, 시리즈①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후속 지원금이 없을 수 있음</p> <p>**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화 자금 비목(안) ></p>																				
	<table border="1"> <thead> <tr> <th>비 목</th> <th>비목 정의</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td> <td>•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td> </tr> <tr> <td>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td> </tr> <tr> <td>인건비</td> <td>•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td> </tr> <tr> <td>지급 수수료</td> <td>•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td> </tr> <tr> <td>여비</td> <td>•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교육훈련비</td> <td>•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광고선전비</td> <td>•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body> </table>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	----------

**창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①BM고도화(기술컨설팅), ②투자유치, ③글로벌진출 등 시리즈 단계별로 공통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BM 고도화	- 비즈니스모델(BM)고도화, 교육·멘토링 등
투자유치	- 투자자 매칭행사,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직접투자 등
글로벌 진출	- 글로벌시장진출 교육, 파트너사 네트워킹 지원 등

-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지역특화 산업분야 관련하여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기관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분야 : **기후테크/제조융합** (주관기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사업화) 탄소중립-기후테크 성장지원	시리즈 1~3	- BM진단, 기후테크 특화 멘토링, 해외진출 컨설팅
(투자유치) 탄소중립-제조융합 IR	시리즈2	- 특화분야 파트너 발굴 및 파트너쉽 구축 투자자 네트워킹 및 직접 투자 지원 등
(오픈이노베이션) 지역혁신 활성화 프로그램	시리즈 1~3	- 지역 특화 산업분야 대·중견기업 협력을 통한 수요기술 매칭 및 제품 고도화 지원
(글로벌 진출) Global Market Nexus	시리즈 1~3	- 현지 법인설립, 현지 파트너쉽 구축 및 투자 유치 지원, 글로벌 PoC등 지원

- 분야 : **친환경·에너지** (주관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사업화) ECO-ENERGY 전략 캠프(E-캠프)	시리즈 1~3	- 친환경 에너지분야 시장 분석 및 BM 재구성 기술전략 수립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
(투자유치) 투자유치	시리즈 1~3	- 투자유치(IR 자료 작성 포함) 교육 및 모의 IR 투자 자원 활용 창업기업 직접 투자 추진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대기업(GS) 오픈이노베이션	시리즈2,3	- GS연계 전문가 멘토링,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글로벌 시장진출	시리즈 1~3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및 해외투자자파트너사 네트워킹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은 [붙임8] 소개자료 참고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5. 2. 19.(수) ~ '25. 3. 7.(금), 16: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
 -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1] 참고)
 -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투자유치이력 사실확인서 1부 ([별첨2] 참고)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시)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기본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공통* (필수)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회사명.zip'으로 압축 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파일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파일 첨부	
	⑤ 투자유치이력 사실확인서 ([별첨2] 참고)	파일 첨부	
	⑥ 비수도권 소재확약서([별첨3] 참고)	파일 첨부	
	⑦ 투자 증빙서류 ([붙임5] 참고) * 투자계약서(전문), 주주명부, 입금증 또는 잔액 증명서(투자금 입금일자 발행기준)	PDF 파일 별도첨부	
시리즈 2, 시리즈 3 (필수)	[시리즈2 지원기업] - 초기투자(누적 1천만원 이상~4억원 이하) 건(최근 2년 이내 1건 이상 해당 있는 경우) [시리즈3 지원기업] -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등 투자유치 건	PDF 파일 별도첨부	

*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대체 가능(단, 확인서 상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5.3월 중	'25.3월 중	'25.4월 초	'25.4월 중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 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시리즈 2,3 트랙)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구분	대상기업	점수	비고
가점 (최대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 수상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1	제출 불요 (창업진흥원 확인)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테크·제조융합 분야*업종 (예비)창업기업 * 주관기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택(지원) 필요 	2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에너지 분야*업종 (예비)창업기업 *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택(지원) 필요 	2	

* 서류평가 가점 해당자는 신청 시 시스템 및 사업계획서 '해당여부' 반드시 체크

** 특화분야(기후테크, 친환경·에너지) 가점 관련 세부 분야는 [붙임9] 참고

- ③ **발표평가** : 시장분석, 아이템 현황, 사업화 추진 성과 및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사업명」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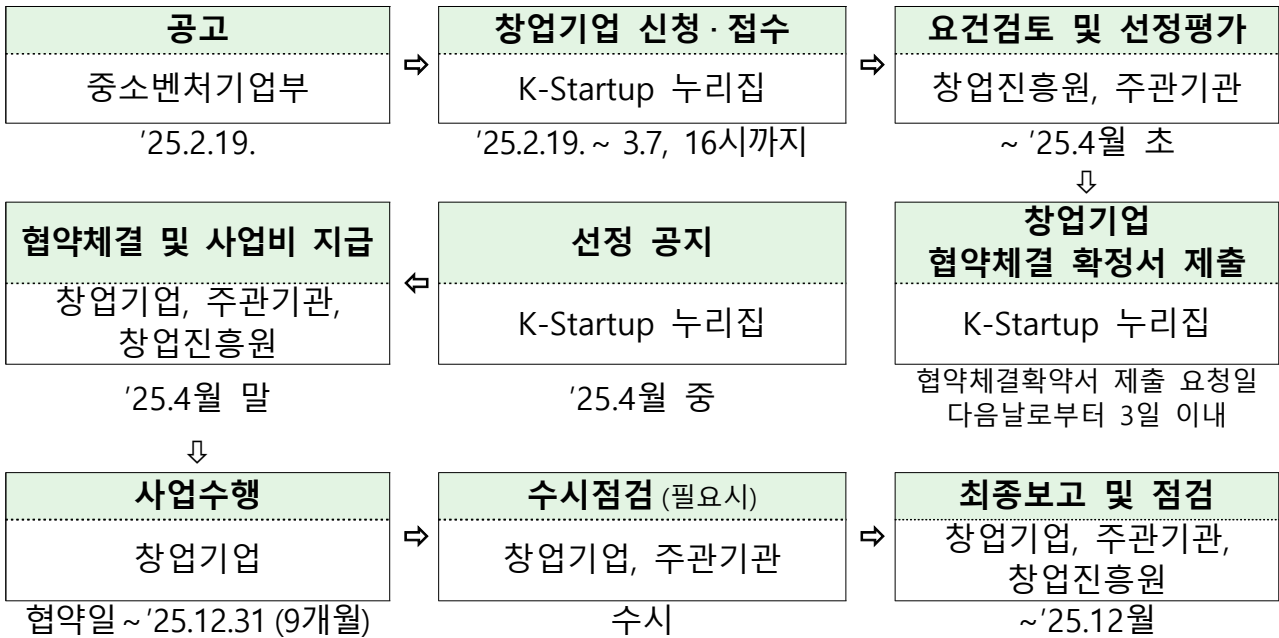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투자전략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투자유치 및 활용계획, 중·장기 투자전략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센터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2025년 특화창업패키지」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할 경우,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서류 및 발표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써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붙임6] 참고)
 -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분야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기후테크/ 제조융합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 아산	(Tel) 041-536-7890
				(Tel) 041-536-7812
2	친환경· 에너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여수	(Tel) 061-661-1932
				(Tel) 061-661-1931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또는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또는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창업여부기준표(국외창업)

① 先 국내창업 → 後 해외창업 (※국내 창업 요건과 동시 검토)

국내	국외	국외창업 여부	국외창업 기산일
개인사업자 (유지)	법인설립 (지분 30% 이상, 최대 주주)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설립 (지분 30% 미만, 최대 주주)	해당없음 (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 (지분 30% 이상, 최대 주주)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설립 (지분 30% 미만, 최대 주주)	해당없음 (지원 불가)	-
법인사업자 (유지)	법인설립 (지분 30% 이상, 최대 주주)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설립 (지분 30% 미만, 최대 주주)	해당없음 (지원 불가)	-
법인사업자 (폐업)	법인설립 (지분 30% 이상, 최대 주주)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설립 (지분 30% 미만, 최대 주주)	해당없음 (지원 불가)	-

② 先 해외창업 → 後 국내창업 (※국내 창업 요건과 동시 검토)

국내	국외	국외창업 여부	국외창업 기산일
법인사업자 (유지)	별도 법인 없음 (영업소 설립)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설립 (지분 30% 이상, 최대 주주)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설립 (지분 30% 미만, 최대 주주)	해당 (국내 법인·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외 법인 설립일

※ 기타 참고사항 (국외 창업의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아웃바운드	① · 국내에 법인을 둔 7년 이내 창업기업(법인)이 외국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	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
	② · 국내 창업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 법인은 본사, 국내 기업은 자회사로 전환	국내기업의 해외전환(Flip)
인바운드	① · 외국에서 설립한 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주식 지분 30% 이상 소유한 최대 주주)이 국내 창업기업과 지배·종속 관계 구축	-
	②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법인 설립 후 국내에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법인 또는 영업소 설치	사업적 연관성 판단 필요

* (사업적 연관성) 국내 법인과 국외 법인이 상호 간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경우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 근거)

붙임 3**지원 제외 대상 업종****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신산업 창업분야(27개)

□ **신산업 창업 분야**

* 관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신산업 27대 분야 >	⑩ 자율주행차	⑳ 신재생에너지
① 인공지능	⑪ 전기수소차	㉑ 이차전지
② 빅데이터	⑫ 바이오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③ 5G+	⑬ 의료기기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④ 블록체인	⑭ 기능성 식품	㉔ 우주
⑤ 서비스플랫폼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㉕ 차세대 원전
⑥ 실감형콘텐츠	⑯ 미래형 선박	㉖ 양자
⑦ 지능형 로봇	⑰ 재난/안전	㉗ 사이버 보안
⑧ 스마트 제조	⑱ 스마트시티	/
⑨ 시스템반도체	⑲ 스마트홈	

붙임 5**특화창업패키지 투자기준 세부 안내자료** 단계별 지원가능 투자기준

구 분	시리즈 ①	시리즈 ②	시리즈 ③
모집 대상	투자실적 없음 (예비창업자 지원 가능)	초기투자단계 창업기업 (누적투자금 1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후속투자단계 창업기업 (누적 투자금 4억원 초과)
제외 기준	업력 3년 초과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3.2.19.~'25.2.19.)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	-

 투자자 요건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②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 ③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CVC)
-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⑤ 개인투자조합**
- ⑥ 전문개인투자자
- ⑦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 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투자계약 유형

- 보통주, 종류주(우선주),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 투자액, 투자계약일, 투자형태(조건)등이 명시된 투자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기술 및 현물 출자, 업무협약,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융자, 투자
확약 등은 불인정

 제출 필요서류

- 필수서류: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또는 잔액증명서

* 신주인수계약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등

- 기타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 간 합의서, 주식양도
계약서 등)

붙임 6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사업화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5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TIPS 프로그램 -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6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Pre-TIPS)	중소벤처기업부
7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Post-TIPS)	중소벤처기업부
8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9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0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2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3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4	· 예술기업 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5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 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엑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연계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2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3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4	·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5	·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6	·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 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7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28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29	·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30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지원 제외사업(사업연도 불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협약 중인 기업 (25년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고) 										
시리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창업패키지 (생애최초 포함) ○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초기·도약기·실험실특화 포함)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특화분야 포함) 										
시리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 (초기·도약기·실험실특화 포함) 										
시리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도약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포함)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 '23, '24년 협업과제) - 창업도약패키지 ('24년 투자병행, 융자병행 과제 포함) ○ 창업중심대학 (초기·도약기·실험실특화 포함) 										
참고	<p>※ '25년 특화창업패키지 구분 단계별 참여 시 이후 각 제외사업 목록에 참여 불가함</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25년 참여사업</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25년도 이후 창업사업화 지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1765 782 1895"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1</td> <td data-bbox="782 1765 1375 1809">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불가</td> </tr> <tr> <td data-bbox="782 1809 1375 1895">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가능 (해당사업 지원자격 충족시)</td> </tr> <tr> <td data-bbox="347 1895 782 2024"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2</td> <td data-bbox="782 1895 1375 1939">초기창업패키지 지원불가</td> </tr> <tr> <td data-bbox="782 1939 1375 2024">창업도약패키지 지원가능 (해당사업 지원자격 충족시)</td> </tr> <tr> <td data-bbox="347 2024 782 207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3</td> <td data-bbox="782 2024 1375 2074">창업도약패키지 지원불가</td> </tr> </tbody> </table>	'25년 참여사업	'25년도 이후 창업사업화 지원	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1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불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가능 (해당사업 지원자격 충족시)	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2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불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가능 (해당사업 지원자격 충족시)	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불가
	'25년 참여사업	'25년도 이후 창업사업화 지원									
	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1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불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지원가능 (해당사업 지원자격 충족시)											
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2	초기창업패키지 지원불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가능 (해당사업 지원자격 충족시)										
특화창업패키지 시리즈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불가										

붙임 8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지원내용

주관기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구분	내용			
지원분야	< 기후테크/제조융합 >			
	지원분야	세부내용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보유 기업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 기술 개발 기업 -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개발 기업 - 탄소관측,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 기술 보유 기업 - 펌프 부품 재질변경 충전식 DC 소형펌프개발, Motor Type 변경 스마트펌프&스마트 피수펌 - 변전실 메인 순간 정전 감지 시스템, 중요 설비 데이터 보호용 전원공급 안정화 시스템 - 모터 고장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일러 모니터링 시스템 복원 기술 보유 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rt Lap 구축, 친환경 소재 개발 - 제전소재, Chiller 및 Heater, 펌프 및 필터류, Robot, 자동화솔루션 기술 - 반도체 공정 생산성 향상 기술, 반도체 산업용수 처리 등 인프라 개선 기술 - 공조기 웬 모터 인버터 에너지 절감, 시스템 에어컨 통합 제어 기술 - 반도체 소재(Metal을 포함하는 Hardmask 소재 개발) 기술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 T플랫폼, 모빌리티향 미래기술, 상생·협력 기술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 & 시스템 개발 기술 - 케이블/ Tool 개발, 사출 기술 개발 / 배터리 알고리즘, 전력 변환 기술 - 솔레노이드 밸브, 차량 시트 공압제어, SW개발 기술 - Vision EOL(End of Line) Tester, AI, ML/DL(Machine/Deep Learning) 			
지원내용	기관	구분	주요 내용	
	중기부·창진원	사업화	BM고도화·개선 등	사업모델 개선 등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0.7~1.5억원 지원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유한 인프라(인력 장비 네트워크 등)를 활용한 BM고도화, 투자, 글로벌 등 특화프로그램 지원
	센터	교육,	교육	BM 경쟁력 및 IPO 준비, R&D 역량강화 등 기술고도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집체 교육 등)
			컨설팅	제품(기술) 성능 분석 및 신뢰성 확보,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증, 기술이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1:1매칭)
		글로벌	해외진출 지원	현지 법인설립 시장진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AC와 협업 진행 / 현지 프로그램은 별도의 평가로 선발)
		투자유치	직접투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그래비티 창업투자조합, 신규 이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검토
			간접투자	협력기관 (한국사회투자, 티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 파트너스)를 통한 연계·후속투자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 매칭	대중견기업 수요 기술 매칭을 위한 밋업, PoC, 법률 자문 등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지원 (대상: 시리즈2,3)	
		포럼	지역 특화 산업분야 기술 및 성공사례 공유, 기술전문가 매칭 등 네트워킹 포럼 진행	
※ 상기 지원내용은 창업기업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및 협업단계에 따라 차등지원될 수 있음				

주관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구분 **내용**

< 친환경·에너지 >

지원분야	세부내용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수소 에너지, 지열 기술 등 해당분야 기술 보유기업
신소재	- 나노, 고분자, 복합, 2차전지, 전자/광학 등 해당분야 기술 보유기업
에너지 저장	- 고효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해당분야 기술 보유기업
탄소중립 기술	- 탄소 포집 및 저장, 친환경 대체 에너지 등 해당분야 기술 보유기업
자원 순환	- 친환경 제품,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등 해당분야 기술 보유기업

기관	구분	주요 내용
중기부·창진원	사업화	<p>BM고도화·개선 등</p> <p>사업모델 개선 등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0.7~1.5억원 지원</p> <p>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p> <p>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유한 인프라(인력 장비 네트워크 등)를 활용한 BM고도화, 투자, 글로벌 등 특화프로그램 지원</p>
	센터	<p>교육</p> <p>ECO-ENERGY 전략 캠프</p> <p>·친환경·에너지분야 최신 시장동향 및 투자전략 세미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팀별 컨설팅 운영</p> <p>투자</p> <p>투자유치</p> <p>·VC·AC 활용 투자유치교육 및 전문 멘토링 지원 ·기업별 IR 자료 작성 및 모의 IR 지원 ·예비/최종 투심위 개최로 투자기업 최종선발 및 지원(총 10억원)</p> <p>글로벌</p> <p>해외진출 지원</p> <p>·한중과학기술서비스협회 주관 현지 체류형 IR 지원 ·글로벌 역량강화교육 및 영문 기업자료 작성 지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및 피칭 기회 제공</p> <p>네트워킹</p> <p>스타트업 시너지 워크</p> <p>·협업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시리즈별 참여기업 간 협업모델 도출 및 후속 지원</p> <p>오픈이노베이션</p> <p>파트너대기업(GS) 협업</p> <p>·전담대기업(GS) - 스타트업 협업 신기술 모델 발굴 ·대기업 전문가 매칭 멘토링 및 PoC 비용 지원 등</p> <p>친환경대기업(현대) 협업</p> <p>·대기업(현대삼호중공업) - 스타트업 협업 신기술 모델 발굴 ·대기업 전문가 매칭 멘토링 및 PoC 비용 지원 등</p> <p>에너지대기업(한전) 협업</p> <p>·대기업(한국전력공사) - 스타트업 협업 신기술 모델 발굴 ·대기업 전문가 매칭 멘토링 및 PoC 비용 지원 등</p>

※ 상기 지원내용은 창업기업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및 협업단계에 따라 차등지원될 수 있음

붙임 9

주관기관별 특화분야(가점) 세부 기술분야

○ 기후테크/ 제조융합 (주관기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택)

분야		세부 기술분야
기후 테크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장치, 건물전기화 - 가상발전소, 송배전, 분산형 에너지공장, 에너지디지털화 - 원전, SMR, 수소, 핵융합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 - 직접포집(DAC), CCUS, 생물학적 탄소제거 - 제조업 공정 개선, 탄소저감 연·원료 대체 - 자원 재활용, 폐자원 원료화, 에너지 회수 - 폐기물 배출량 감축, 폐기물 관리시스템, 친환경 생활소비제품 - 신재생, 신발전, 기후환경, 스마트운영, 설비 신뢰도 - 펌프 부품 재질변경, 충전식 DC 소형펌프개발, Motor Type 변경, 스마트 팜&스마트 피쉬팜 - 모터 고장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일러 모니터링 시스템 복원, 수 변전실 옥외 변압기 자동 냉각장치 시스템 구축, 변전실 메인 순간 정전 감지 시스템 구축, 중요 설비 데이터 보호용 전원공급 안정화 시스템 구축
	그린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육, 세포배양육, 대체유, 대체아이스크림 - 음식물쓰레기 저감, 친환경포장, 식품 부산물 활용 - 친환경농업, 대체비료, 스마트팜 - 두유 농도 측정 기기, 친환경 기술(탄소 저감 기술)
	우주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탄소관측, 모니터링, 기후감시·예측, 기상정보
	기후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산업, 재난방지시설·시스템
	AI-데이터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탄소 데이터 컨설팅, 녹색금융, 블록체인, NFT
제조 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rt Lap 구축, 친환경 소재 개발 - 제전소재, Chiller 및 Heater, 펌프 및 필터류, Robot, 자동화솔루션, 계측 - 반도체 공정 생산성 향상 기술, 반도체 산업용수 처리 등 인프라 개선 기술, 반도체 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대기오염 저감 기술, 기타 반도체 사업 적용 가능 스마트 기술 - 외등 타이머 ON-OFF 자동 시스템 구축, 공조기 웬 모터 인버터 에너지 절감, 시스템 에어컨 통합 제어, ESS에어컨 실외기 자동 냉각장치 시스템, 공조용 웬 모터 고장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전압강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용량 모터 기동전류 감소 시스템, 옥외 변전실 유입변압기 자동 냉각장치 시스템, 스팀 응축수 폐열 및 재증발 증기열 재사용 시스템 - 반도체 소재(Metal을 포함하는 Hardmask 소재 개발)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차량용 배터리, 물류, 퍼스널 모빌리티 - 카카오 T플랫폼, 모빌리티향 미래기술, 상생·협력, ESG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디바이스 & 시스템 (클러스터, 디스플레이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 가능한 솔루션) - 케이블-Tool 개발, 사출 기술 개발 - 배터리 알고리즘, 전력 변환 기술 - 솔레노이드 밸브, 차량 시트 공압제어, SW개발 - Vision EOL(End of Line) Tester, AI, ML/DL(Machine/Deep Learning)

○ 친환경·에너지 (주관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택)

분야	세부 기술분야
친환경·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수소생산 및 연료전지 시스템(모빌리티용 시스템 등)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수소터빈 및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에너지 저장 장치 -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 중소형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비폭발성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 수소충전용 장비 및 부품, 미활용열 이용/발전 시스템 -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 고효율 열에너지 저장 및 활용 기술(저온·고온 축열) -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망 구축기술 등
	신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배터리 금속 회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친환경 전해질 회수 및 재활용 기술 -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배터리 조립, 측정, 검사, 분석 기술) - 고전압/고출력에서 고온수명 안정화 전해액 첨가제 개발 및 성능유지 - 고에너지밀도를 갖는 전고체전지 제조공정 및 상용화 기술 등 - 전기자동차용 폐 배터리 재사용(Reuse) 기술 - 차세대 바나듐 배터리 개발, 성능개선, 고안정성 전해질 기술 - 음극재/양극재 개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고성능 전극 및 전해질 소재 개발 - 고안전성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 이차전지용 친환경 바인더 및 접착제 기술 등
	에너지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전고체, 나트륨이온, 흐름전지, 고온배터리 배터리 ESS -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슈퍼커패시터 및 하이브리드 ESS - 메탄올 및 합성연료(SynFuel) 기반 에너지 저장 기술 - 이산화탄소(CO₂) 활용 Power-to-Gas(PtG) 저장 기술 -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CAES) 및 초임계 CO₂ 저장 기술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Reuse) ESS, 원자력 기반 에너지 저장 및 활용 기술 - 수전해 기반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 암모니아 기반 수소 저장 및 운반 기술,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기술 - 고압 수소 저장 기술(튜브 트레일러, 압축 탱크 등) - 수소 액화 및 저장 시스템, 축열, 전기-열 변환, 초저온 냉열 저장시스템 등
	탄소중립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포집·저장 기술(연소후, 연소전, 직접공기포집, 고효율 흡수·흡착제 개발) - 탄소 저장 및 지중 주입 기술, 광물화 및 탄산염화 기술 - 탄소 활용·전환 기술, 탄소저감 산업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 저탄소 철강 및 시멘트 공정, 순환자원 활용/자원 최적화 기술 -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팩토리 및 공정혁신 기술 -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기술(수소 기반, 탄소중립, 저탄소 암모니아 등) - 탄소 배출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스마트팜 및 스마트피쉬팜 시스템 - 산림 및 토양 기반 탄소 흡수 기술 등
	자원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폐기물 재활용, 전자폐기물 소재 회수 기술 -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전환 - 폐기물 열분해 및 가스화 기술, 고효율 자원순환형 제조 공정 기술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 재활용 가능 고기능성 복합소재 개발 - 폐배터리 소재 회수 기술, 배터리 셀 재사용 및 재제조 기술 - 이차전지 열처리 및 친환경 용매 기반 재활용 기술 - 산업용 폐수 정화 및 재이용 기술, 해수 담수화 및 물 재이용 시스템 - 하·폐수 기반 바이오가스 및 에너지 회수 - AI 기반 폐기물 관리 및 최적 재활용 경로 분석 - 탄소·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자원순환 설계(LCA, Life Cycle Assessment) - 블록체인 기반 자원순환 및 폐기물 인증 시스템 등